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
(경유)

제목 2020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계획 승인 통보

1.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-0045호(2020.4.10.) 관련입니다.
2. 귀 협회에서 요청하신 2020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계획 승인요청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가. 2020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계획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 "응급의료법")」 제43조(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귀 협회의 **2020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계획을 수정승인 통보**하오니,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실적보고서는 2021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용 산정 변경(간접비용 부과)

- 보수교육 비용의 합리적 산정 및 대상자 의견 수렴, 타 직역과의 형평성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

다.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대상자 유권해석 검토

-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"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"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,
- 일반행정 등에 종사*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.

* 119구조대원 및 구급관련 내근업무 종사자도 보수교육 대상자임

붙임 : 2020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계획서(수정)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행정사무관 **정순애** 응급의료과장 **박재찬** 전결 2020. 4. 17.

협조자

시행 응급의료과-1786 (2020. 4. 17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(어진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560 팩스번호 044-202-3930 / jsa0523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